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 129

□ 위원회 회부일 : 2003. 10. 22.

□ 제안이유

- 신규 국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80억원(국·시비 50%)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, 도로·상하수도 지하시설물 탐사·측량 등의 지리정보종합관리시스템(GIS) 구축과
- 도로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 이름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시스템 사업의 원활한 추진관리를 위하고,
- 시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방진료의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와 보건소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
-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건물준공에 따른 시설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최소인력을 증원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ㅇ 기관별 정원조정
 - · 집행기관의 정원 : 1,032명(⊕9)
 - ·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1명(변동없음)
- 단위사업별 정원 증원 내역
 - ·지리정보종합관리시스템(GIS) 구축사업: 3명(전산, 토목, 행정)
 - ·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: 1명(행정)
 - · 한방진료 보조 전담 및 알코올상담센터 등 : 2명(간호, 보건)
 - ·북항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: 3명(기계, 전기, 화공·환경)

□ 검토의견

 본 개정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리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인력과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시스템 사업의 인력 및 북항하 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정원의 개정을 위한 안으로

0	정원조례의 개정은 "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" 제14조 에 의해 표준정원(1,094명)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1,044명보다 9명을 증원 1,053명으로 증원하는 것임.
0	금번 지리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(3명),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(1명), 한방진료보조 및 알콜상담센터 운영(2명),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운영(3명)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은 신규로 소요되는 업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표준정원 범위내의 인력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이내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.